「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과 위탁대상을 구분하여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명칭 정비(안 제4조)

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과 위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사업 위탁 대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였음.

- 다만, 위탁 대상이 확대될 경우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관련 부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노동단체 지원 및 사무 위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